

제333회

임 시 회

행정위원회 안건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영 동 군 의 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영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3. 31.

영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32
----------	---------

제출년월일 : 2025. 3. 31.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영동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의 용어 정리(안 제2조)
- 지원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 명문화(안 제3조)
-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안 제4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첨 부 1. 영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향인”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등”이라 한다)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과 출향인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출향인등이 추진하는 정기총회 및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3.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대회·설명회 등의 참여
4.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 군수는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 및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등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장 조 도 숙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3. 31.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025-33
----------	---------

제출년월일 : 2025. 3. 31.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2025년 7월 1일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개편 시행으로 이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고자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 “영동축제관광재단” 을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으로 변경
- 목적 변경(안 제2조)
 - 관련 조례 변경 및 문화사업 추가에 따른 자구 일부 수정
- 재단의 확대개편에 따른 문화사업 추가(안 제4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기획공연,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
- 재단 이사 정수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 “이사 10명 이내” 를 “이사 12명 이내” 로 변경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 첨 부 1.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을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정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Festival”를 “Culture”로, “YFTF”를 “YCTF”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 관광, 축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기획공연,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3. 문화, 관광마케팅, 축제사업

4. 문화, 관광, 축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
5. 문화·관광·축제자원의 개발, 상품화, 마케팅, 콘텐츠 확충
6. 재단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수익사업
7.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제1항제2호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u>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u> 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Yeongdo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 (약칭 <u>YFTF</u>)로 한다.	제1조(명칭)----- <u>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u> ----- <u>Culture</u> ----- -- <u>YCTF</u> -----.
제2조(목적)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다음부터 “재단”이라 한다)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영동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 관광, 축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u> 2. <u>관광 관련 위탁사업</u> 3. <u>재단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수익사업</u> 4. <u>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u>	제4조(사업) ----- ----- 1. 「 <u>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u> 」 <u>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u> 2. <u>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기획 공연,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u> 3. <u>문화, 관광마케팅, 축제사업</u> 4. <u>문화, 관광, 축제 관련 중앙부처</u>

<u>5.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u>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u>10명</u>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2명 ② (생략)	<u>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u> <u>5. 문화·관광·축제자원의 개발, 상품화, 마케팅, 콘텐츠 확충</u> <u>6. 재단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수익사업</u> <u>7.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u> <u>8.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u>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 -----<u>12명</u>----- ----- ----- ② (현행과 같음)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설립·운영)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두어야 하며,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3. 3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5-34
----------	---------

제출년월일 : 2025. 3. 31.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작점리·동정리)

1. 제안이유

-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2. 주요내용

사업명	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위치	사업내용	비고
계			1,000			
마을 만들기 사업	작점리	2024~2026	500	추풍령면 작점리 241-1	고령자 공동생활홈 조성	
	동정리	2025~2027	500	영동읍 동정리 112-2	공동급식시설 조성	

3. 편입 토지 현황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취득면적			
토지	추풍령면 작점리 241-1	답	2,212㎡	2,212㎡	이상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	영동읍 동정리 112-2	전	647㎡	647㎡	김현선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4. 예산상황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군비 1,000 / 지방이양사업)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000	50	200	400	350	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군 비	1,000	50	200	400	350	0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총 계	1,000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00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실시설계 ※ 1개소당 50백만원 × 2개소 = 100백만원
토지매입비	143	- 작점리 : $2,212\text{m}^2 \times 7,500\text{원} = 16,590\text{천원}$ - 동정리 : $647\text{m}^2 \times 196,000\text{원} = 126,812\text{천원}$
시설공사	710	- 작점리 : 고령자 공동생활홈 조성(408백만원) - 동정리 : 공동 급실시설 조성(302백만원)
지역역량강화	47	- 작점리 : $25,000\text{천원} \times 1\text{식} = 25,000\text{천원}$ - 동정리 : $22,000\text{천원} \times 1\text{식} = 22,000\text{천원}$

5. 추진경과

○ 2024. 3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작점리)

○ 2024. 8월 : 용역 일시중지(작점리) ※ 대상지 보상협의 지연

○ 2024. 11월 : 동정리 장기발전계획수립(예비계획)

○ 2024. 12월 : 사업대상지 확정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7. 향후계획

- 2025. 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
- 2025. 4월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2025. 5월 : 대상지 매입(보상, 소유권 이전 등)
- 2025. 6월 : 건축공사 착공(작점리)
- 2025. 6월 ~ 11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동정리)
- 2025. 12월 : 건축공사 준공(작점리)

붙임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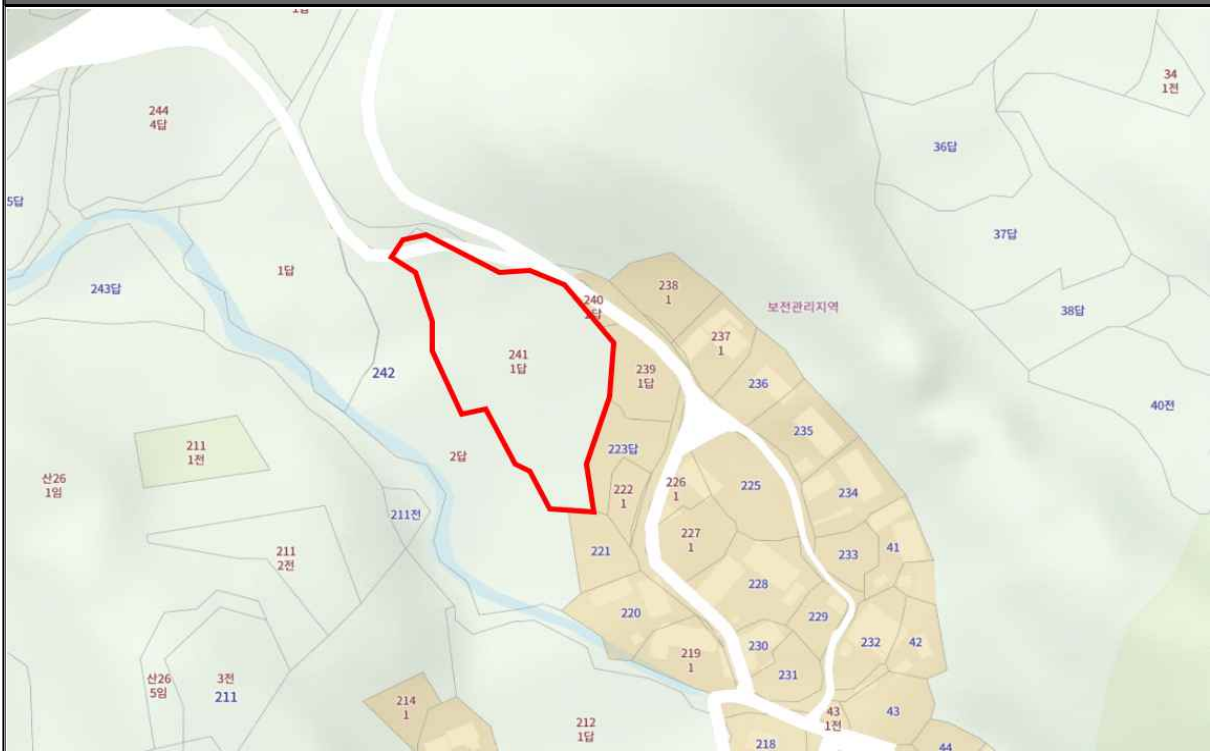
붙임1

위치도 및 지적도

□ 위치도 (작점리 241-1)



□ 지적도 (작점리 241-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사업

1. 제안이유

- 국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관내 생물자원의 전시·체험·교육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군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자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영동읍 매천리 45-1, 45-2번지 외
- 기 간 : 2023년 1월 ~ 2026년 12월
- 사업규모 : 연면적 1,351㎡(지상2층/지하1층)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5,000/도1,500/군3,500백만원)
- 사업내용 : 체험연구관 건물 신축 1식

3. 편입토지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이용계획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영동읍 매천리 45-1	과수원	1,547	1,009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 관광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동읍 매천리 45-2	과수원	2,555	89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	
영동읍 매천리 52	과수원	370	135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차장(저축), 중로3류, 가축사육제한 구역, 관광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동읍 매천리 46-4	도로	16	15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 관광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동읍 매천리 536	도로	1,329	9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차장(저축), 중로3류, 가축사육제한 구역, 관광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동읍 매천리 46-11	도로	17	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 관광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필지		5,834	2,153			

4. 예산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000	2,000	600	5,000	2,400
국 비	5,000	1,000	300	2,500	1,200
도 비	1,500	300	90	750	360
군 비	3,500	700	210	1,750	840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총 계	10,000	
건축공사	7,900	- 기본 및 실시설계 : 477백만원 - 건축공사 : 5,523백만원 - 실내건축 : 1,900백만원
조경공사	2,100	- 조경공사 : 2,100백만원

5. 추진경과

- 2024.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8월 완료예정
- 2025.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변경계약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7. 향후계획

- 2025.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25. 6월 : 실내건축 설계·공사 계약
- 2025. 8월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5. 10월 : 건축공사 입찰·계약
- 2025. 11월 : 건축공사 착공
- 2026. 12월 :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물 준공

붙임 : 위치도 및 현황도 각 1부.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및 지적도



□ 조감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간면 용암리 용암1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

1. 제안이유

- 24년 7월 집중호우(2시간 130mm)시 침수피해 발생지역으로,
- 기존 유수지 저수용량 부족으로 펌프장 주변 내수 침수피해 발생이 빈번하고, 대형 부유물(생활쓰레기, 목재 등)에 의한 배수펌프장 제진기 스크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수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70-1번지
-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 사업규모 : 부지 5,133㎡
- 사 업 비 : 600백만원
 - 1회추경 230백만원 예산편성
- 사업내용 : 황간면 용암1 게이트23 펌프장 유수지 확대*
 - * 기존 설치 및 확보되어 있는 용암1 게이트 펌프장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확장

3. 편입 토지 현황

종류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취득면적			
토지	황간면 용암리 670-1	대	5,133㎡	5,133㎡	충청북도 (교육감)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활용	

4. 예산상황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공 종	물 량	금 액 (백만원)	산출근거
합 계		600	
1. 보상비		230	• 토지보상 40천원 x 5,133㎡ = 205,320천원 • 농업손실보상 4,740원 x 5,133 = 24,330천원
2. 공사비			
가. 토공		80	• 토공 : 8,000㎡ x 10천원 = 80,000천원
나. 블록공	식생블럭 320m	200	• 블럭 400m x 500천원 = 200,000천원
다. 부대공	부대공 1식	50	
3.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1식	20	
4. 실시설계비	실시설계 1식	20	

5. 추진경과

- 2025. 2. : 영동교육지원청 편입토지 매매 가능여부 사전협의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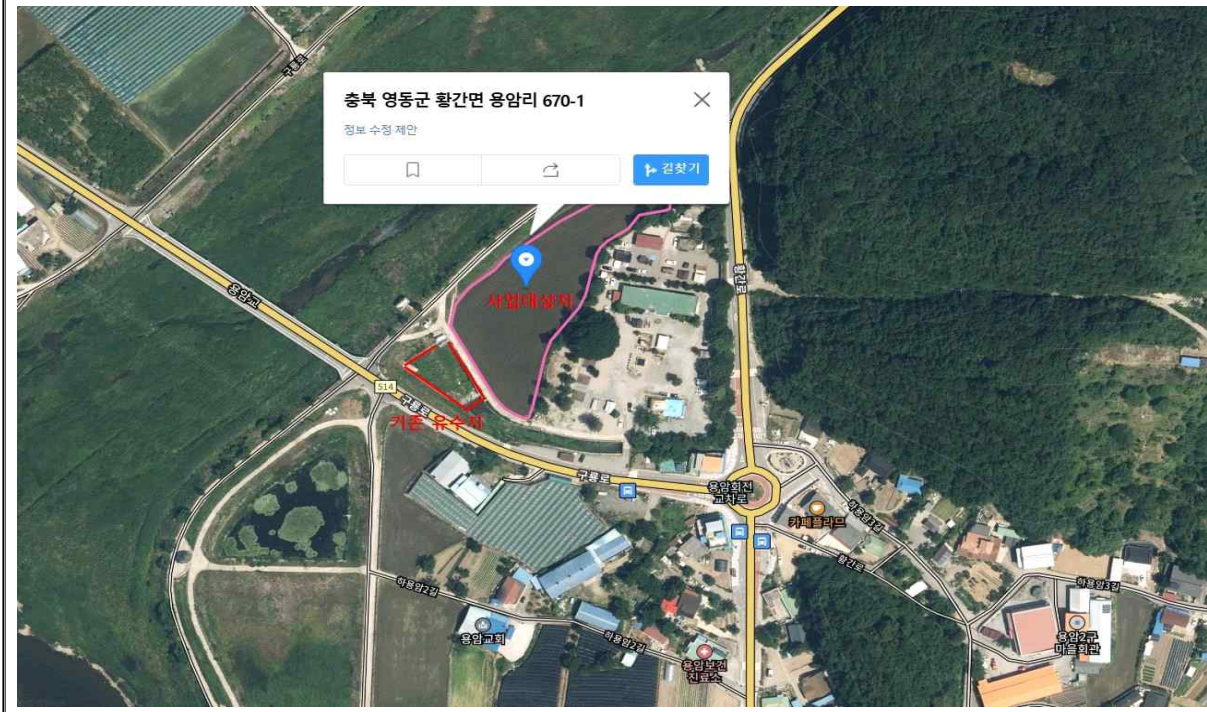
7. 향후계획

- 2024.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 · 의결
- 2024. 4월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확정
- 2024. 5월 :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추진
- 2025. 6월 : 우수지 확장공사 착공
- 2025. 12월 : 우수지 확장공사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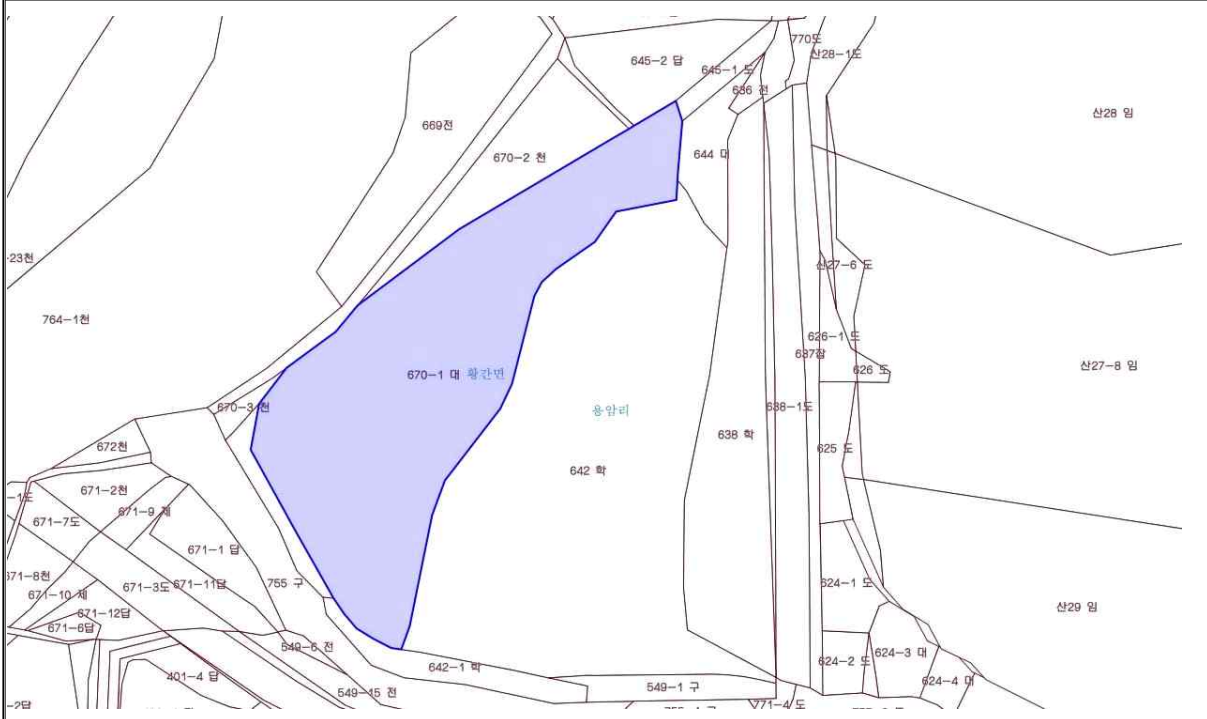
붙 임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끝.

위치도 및 지적도

☐ 위치도



□ 지적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취소

1. 제안(취소)이유

- 본 사업대상은 「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보건소의 노후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한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견고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특별교부세 감소 및 우리군 재정 여건상 대규모 군비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취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 기 의결되었던 「영동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영동읍 매천리 447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3. 1. ~ 2025. 6.
- 사업규모 : 지상4층 연면적 5,940㎡
- 사 업 비 : 13,700백만원(국비6,910/도비1,728/군비5,062)
- 사업내용 : 보건의료서비스시설 신축

3. 추진경과

- 2022. 11. : 보건소 신축 기본계획(안) 수립
- 2023. 03. :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원안가결)
- 2023. 03. : 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
- 2023. 09. : 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확정
- 2024. 05.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건부 가결)
- 2025. 01. : 신축사업 건축기획 용역 준공

4. 취소사유

- 보건소 신축 사업 건축기획 용역 준공 결과 대규모 군비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 현재 특별교부세 감소 및 우리군 재정 여건상 대규모 군비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자 함

※ 건축기획용역 준공 결과 사업비 : 29,928백만원(국비6,979/도비1,745/군비21,204)

5. 편입(취소) 부지 현황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매천리 447, 448	과수원	3,157㎡	3,157㎡	영동군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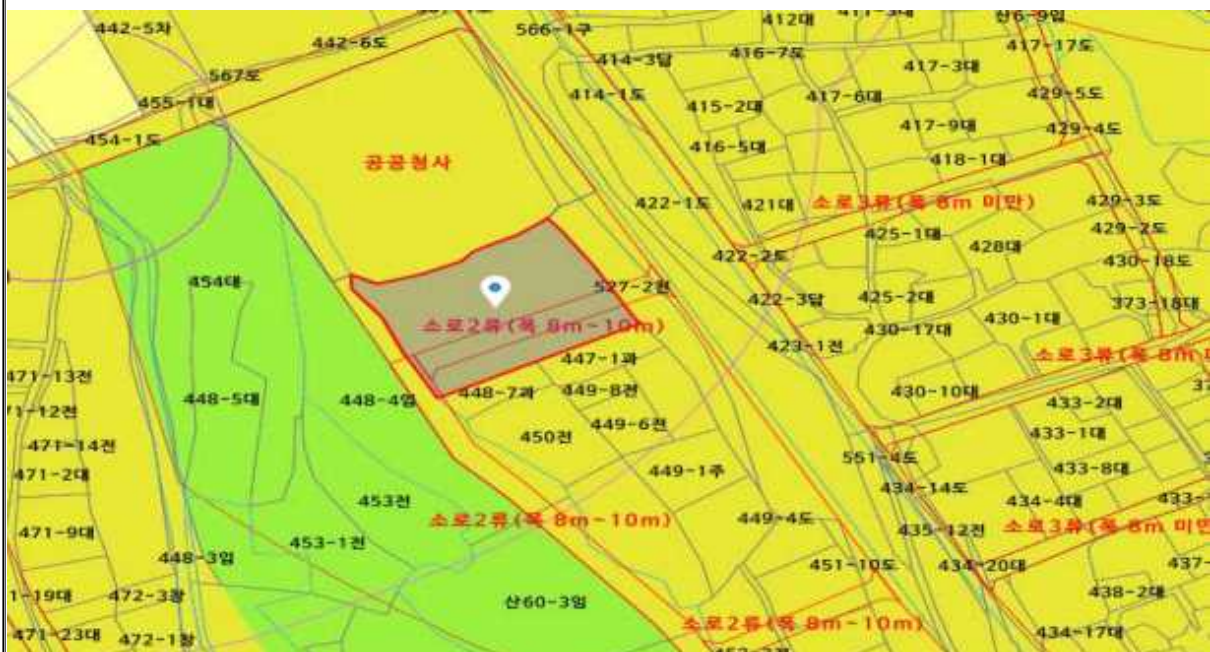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끝.

□ 위치도



□ 지적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필지/동/㎡/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16	16,177.00	3,163.16	2	7,345.00	246.59	18	23,522.00	3,409.75	
		건 물	6	6,040.00	18,403.99	1	1,351.00	10,000.00	7	7,391.00	28,403.99	
		기 타	8	9,080.00	21,599.34	0	0.00	0.00	8	9,080.00	21,599.34	
	1.매 입	토 지	15	14,939.00	963.16	2	7,345.00	246.59	17	22,284.00	1,209.75	
		건 물	6	6,040.00	18,403.99	1	1,351.00	10,000.00	7	7,391.00	28,403.99	
		기 타	8	9,080.00	21,599.34	0	0.00	0.00	8	9,080.00	21,599.34	
	2.교환으로 취득	토 지	1	1,238.00	2,200.00	0	0.00	0.00	1	1,238.00	2,20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처분	계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1.매각,멸실 등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2.양 여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3.교환으로 처분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 정기분 :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행복복지거점 조성),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모리, 상용, 천작, 금리, 마곡, 구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

○ 제1차 수시분 :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변경),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사업, 장동기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설계리 공영주차장 조성, 동정리 제1공영 주차장 조성

○ 제2차 수시분 :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작점리, 동정리),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사업, 황간면 용암리 용암1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

2025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 ²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공시지가액 (시가표준액, 공사비)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회차구분	비 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연면적)							
계		토지1필지, 건물1개소			8,696.00	10,246.59					
1	토지	추풍령면 작점리 241-1	답	2,212	2,212	16.59	2025	영동군 마을만들기 사업(작점리, 동정리)	이상연	제2차 수시분	매입
1	건물	영동읍 매천리 45-1. 45-2번지 외		1,351	1,351	10,000.00	2025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사업		제2차 수시분	신축
2	토지	황간면 용암리 670-1	대	5,133	5,133	230.00	2025	황간면 용암리 용암1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	충청북도(교육감)	제2차 수시분	매입

2025년 제2차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 ²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처분면적	매각예정액	처분시기	처 분 사 유	소 유 자	회차구분	비 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연면적)							
계		0필지		0.00	0.00	0.00					
				해	당	없	음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3. 31.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35
----------	---------

제출년월일 : 2025. 3. 31.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접종종류 및 대상 규정함(안 제3조)
 - 대상포진 : 50세 이상(기 제정 운영, 통합관리)
 - 인플루엔자 :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백일해 : 임산부 및 그 배우자
-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제7조)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피해보상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조)

3.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2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첨 부 1.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영동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종기관”이란 영동군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 50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 및 그 배우자

제4조(지원기준)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백일해 : 임신 시마다 1회(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1회 지원)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 종류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임신확인서 등 제3조

에 따른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동군 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 안 명 :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조문 : 제3조(접종종류 및 대상), 제4조(지원기준)
제6조(비용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선택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접종 시행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지원대상

- 대상포진 : 주민등록을 둔 50세이상 군민 (단위:명)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50세 군민	606	545	443	443	406

- 인플루엔자 (단위:명)

구분	대상자 수	65세이상	사업대상자	비고
계	8,027	5,032	2,995	65세이상 무료접종으로 제외
수급자	2,880	1,492	1,388	
장애인	4,185	2,683	1,502	
국가유공자	962	857	105	

- 백일해

-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103명 및 그 배우자 103명(2024년 기준)

2) 사업규모 : 3,807명

나.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5년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307-01)	169,874

○ 대상포진

- (백신 구입비) $90,000\text{원} \times 1\text{회} \times 606\text{명} = 54,540\text{천원}$
- (접종 시행비) $19,610\text{원} \times 1\text{회} \times 606\text{명} = 11,884\text{천원}$

○ 인플루엔자

- (백신 구입비) $12,000\text{원} \times 1\text{회} \times 2,995\text{명} = 35,940\text{천원}$
- (접종 시행비) $19,610\text{원} \times 1\text{회} \times 2,995\text{명} = 58,732\text{천원}$

○ 백일해

- (백신 구입비) $23,000\text{원} \times 1\text{회} \times 206\text{명} = 4,738\text{천원}$
- (접종 시행비) $19,610\text{원} \times 1\text{회} \times 206\text{명} = 4,040\text{천원}$

다. 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참고

라.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비용추계재원 : 군비(100%)

4. 작성자 : 보건소장 조 숙 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세 출	169,874	163,188	152,008	152,008	147,952	785,030
°대상포진	66,424	59,738	48,558	48,558	44,502	267,780
°인플루엔자	94,672	94,672	94,672	94,672	94,672	473,360
°백일해	8,778	8,778	8,778	8,778	8,778	43,890
재 원 조 달	169,874	163,188	152,008	152,008	147,952	785,030
국 비						
도 비						
군 비	169,874	163,188	152,008	152,008	147,952	785,030
기 금						
그 밖의 재원 (지방채, 민자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6. (생략)

②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11.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 ⑨ (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 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전단에 열거된 순위에 따른다)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 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이 미지급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이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3항제1호 각 목의 자료 중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3. 31.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36
----------	---------

제출년월일 : 2025. 3. 31.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현실화 및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 종류 삭제(안 제7조제1항, 별표 1)
- 그 밖에 용어 및 문장 정비
 - 용어 정의 정비(안 제1, 3조)
 - 법률 명칭 및 내용,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 제9조제1호)

3.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 첨 부 1.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에 따라”를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영동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소”를 “영동군 보건소”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동 약가기준액표”를 “이 금액표”로,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실구입가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6조의2 중 “군수”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증명발급 수수료)”를 “(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명발급 수수료는”을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
제후유증 2세환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제10조 중 “비용은 당일에”를 “수납금은 다음 날(단, 다음 날이 휴일 또
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추징 할”을 “추징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동군 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제7조제1항)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신체검사서	〃	500	
3. 일반 진단서	〃	500	
4. 특별 진단서	〃	2,000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5. 사망 진단서	〃	500	
6. 사체 검안서	〃	5,000	
7.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비 (건강진단 결과서 포함)	〃	3,000	「식품위생 분야 종 사자의 건강진단 규 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8. 운전면허, 건설기계면허신체검사서	〃	500	
9.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영동군 ----- -----.
제3조(진료수가)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① 영동군 보건소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전액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약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 --- 이 금액표----- -----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
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
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
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
거 징수한다.

② (생 략)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
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
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
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20
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
로 등록된 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
----- 영동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①-----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
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군
수는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2. ~ 4. (생 략)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 여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u>를」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 엽제후유증 2세환자,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u>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납부) ----- <u>수납금은 다음 날(단, 다음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u> 제11조(추징) ----- ----- ----- <u>추징할</u> -----. <u><삭 제></u>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보건소장 조 숙 영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정보 25.1.1)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참조)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